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들은 급속한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0대 대선을 맞아 각 대선후보의 정보통신 및 정보인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첨부하는 바와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책 선거를 위해 2022년 1월 28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 문의 및 회신 :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02-723-0808 pil@pspd.org)

진보네트워킹센터 (담당:오병일 02-774-4551 antiropy@gmail.com)

1.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020년 1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차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보주체도 모르게 자동화된 방식의 개인정보 생성,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 증가, 서비스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등 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각국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and Default) 제도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3) 현재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전반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변

2.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인공지능 서비스는 검색, 추천 알고리즘, 챗봇 뿐 아니라 채용, 금융서비스, 범죄예방 등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점차 그 활용이 넓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영역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인권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왔습니다. 최근 총격을 안겨준 법무부·과기부의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증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1)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AI 채용 등 공공기관이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적절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때까지 공공장소 얼굴인식 등 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판매·사용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3) 인공지능이 편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학습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편향성과 차별,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및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큼니다. 이에 인공지능의 인권과 안전을 감독하고 도입 기관의 책무성과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법률적 규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규율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3. 통신비밀의 보호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 및 야당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의 무분별한 수집은 비단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며,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을 활용해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자의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정보주체에게는 통지조차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통신자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통신자료(가입자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통신자료 제도 외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 기지국 수사 및 실시간 위치추적 요건의 엄격화, 인터넷 패킷 감청의 요건 강화 등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4. 망중립성 보장

한국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망중립성을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5G 환경으로의 변화를 명분으로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미 유럽연합은 망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5.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in) 효과, 데이터 지배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승자독식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일방적 정책 변경,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과 상생을 위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 및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부당기업인수·이해충돌·차별취급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	----	----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3)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와 근절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4) 빅테크/플랫폼이 맞춤형 광고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 혹은 행태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거나 얼굴인식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6. 주민등록제도 개선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왔고,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제한적이거나 허용되었고,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령은 많고 통신, 금융, 의료 등 주요 민간 부문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주민등록번호 대신 (조세번호, 건강보험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7.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생체인식기술 등 사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감시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설안전 등 경영상 목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도입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성능이나 감시 범위,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고지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근로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인 고용주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노사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감시설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원격으로 근로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전자적 감시설비가 활용되고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전자적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합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자 감시를 막고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8. 인터넷 표현의 자유

소위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 법안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비단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소위 1인 미디어, 결국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책임을 묻거나 허위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라고 간주되는 정보)에 대해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했던,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이용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혹은 가짜뉴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현행 임시조치 제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9.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법제 및 거버넌스는 일관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국정원이 공공부분 정보통신망을, 과기정통부가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법제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의안번호 211314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투명성과 민관협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이버보안업무를 기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권한을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의안번호 2113670.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1)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바람직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